

2026년 제6회 창원시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

2026년 제6회 창원시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
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6년 10월 30일
창원시의회의사위원회위원장

1.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

임용 분야	임용 직급	임용 인원	임용 기간	임용예정 부 서	담당 직무
정 책 지원관	지 방 행 정 주 사 보 (일반임기제)	2명	1년 (주40시간)	창원시의회 사무국	<div>- 조례 제정·개정·폐지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·조사· 분석·검토 지원</div> <div>-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</div> <div>-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, 시정질문서, 5분 자유발언 등 작성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·취합</div> <div>- 의원의 공청회·토론회·세미나 등 준비, 홍보 및 개최 지원</div> <div>- 기타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과 그에 수반되는 활동에 대한 실무 지원</div> <div>(자료 수집·분석·조사·검토지원, 주민·전문가 의견수렴, 보도자료 작성 등)</div>

※ 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계약 가능

2. 근거 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- 「지방공무원법」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
-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
- 「창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」

3. 응시자격요건

※기준일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

○ 공통요건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 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
- 지역·성별: 제한없음 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)
- 응시연령: 18세 이상 (2008. 12. 31. 이전 출생자)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(외국인이 아닌 자)

○ 직무 관련 자격요건: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

분야	자 격 요 건
정 책 지 원 관 (지방행정주사보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*이 있는 사람 2.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*이 있는 사람 3.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*이 있는 사람 <hr/> <p>*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회, 지방의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*, 출자·출연기관**, 연구소, 대학교(부설 연구기관 포함),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▶ 예산 편성, 결산 검사 및 성과관리, 예·결산 관련 재정사업 분석 및 평가, 정책개발 지원,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·분석·검토 실무경력 <p>*공공기관: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에 따른 공공기관 고시(재정경제부) **출자·출연기관: 2026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(행정안전부)</p>

- ※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7조제5항)
- ※ 학위취득 과정은 관련 경력의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
- ※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, 담당업무,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, 반드시 임용 후 수행 예정인 주요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력이어야 함
- ※ 전일근무(1일 8시간)가 아닐 경우,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
- ※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(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명시가 어려울 경우, 내부공문 및 사무분장표, 인사기록카드, 근로약정서 등 별도 증빙서류 제출 가능)

4. 보수수준 및 복무

-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 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할 수 있음

※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☞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34조 [별표13]

구 분	연 봉 액 (단위: 천원)	
	상 한 액	하 한 액
일반임기제 7급(상당)	70,782	50,272

- ※ 연봉 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- ※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에 한함)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
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가입 가능)
- 근무조건: 1일 8시간, 주당 40시간
- 복무는 임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, 「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」 준용

5.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

가. 시험일정 ※ 본 일정 및 면접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원서접수 기간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(예정)	면접시험 시행(예정)		최종합격자 발표(예정)
		일 시	장 소	
2026. 11. 10.(화) ~ 2026. 11. 16.(월)	2026. 11. 23.(월)	2026. 11. 27.(금)	창원시의회 3층 소회의실	2026. 11. 30.(월)

- ※ 「면접시험 시행 예정일」은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기준일이며 구체적인 응시분야 시험 일정은 「서류전형 결과 및 면접시험 계획」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기 바람
- ※ 시험 일정은 서류 접수자 개인별 통지를 하지 않으며,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창원시의회 홈페이지(<https://council.changwon.go.kr>)에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 바람

나. 접수방법: 등기우편 접수 또는 방문 제출(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)

- 접수기간: 2026. 11. 10.(화) ~ 11. 16.(월) / ^{평일기준} 5일간
- 방문접수: 09:00 ~ 18:00 (12:00 ~ 13:00 ^{점심시간} 제외)
- 접수장소: 창원시의회 의정담당관 의정팀(창원시의회 3층)
-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 양식 활용

등기우편 접수 안내

- ▶ 주 소: 우(51435)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, 창원시의회 의정담당관 의정팀
- ▶ 유효 일: 원서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근무시간(18:00) 내 도착해야 함
 - ※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활용한 접수는 불가
- ▶ 응시수수료: 우체국 ‘통상환증서(7,000원)’ 를 구입하여 제출서류와 동봉하여 제출
- ▶ 기타사항
 - 등기우편은 창원시의회 의정담당관 의정팀(☎055-225-5314)으로 전화 확인 후 송부
 -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“○○임기제 응시원서 재증” 표기
 - 등기우편 접수 시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휴대폰 메시지로 통보 예정이며,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

※ 대리접수, 우편 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
※ 중복접수 불가 (1인 1분야 지원)

6. 선발방법

가. 1차 시험: 서류전형

- 당해 직무 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-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55조제4항)
 - ※ 응시자가 많을 경우, 적정 면접 인원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를 결정
- 합격자 개별통보 및 창원시의회 홈페이지(<https://council.changwon.go.kr>) 공고

나. 2차 시험: 면접시험

-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검정
-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정 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고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
다. 최종합격자 발표

-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및 창원시의회 홈페이지(<https://council.changwon.go.kr>) 공고
- ※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- ※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해 임용 자격이 부여됨

7. 제출서류

※편철 하지 말고 낱장으로 제출(스테이플러 사용 금지)

제출서류	내 용	비 고
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	▶ 목록별로 제출 여부 표시	[별지 제1호]
② 응시원서 1부	▶ 응시수수료 - 6·7급(나·다급): 7,000원 ▶ 수납처: 창원시청 본관 1층 민원실 ^{인증기} 날인 ▶ 정부 및 타 지자체 수입증지 적용 불가 ▶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 (해당증명서 제출 필요)	[별지 제2호]
③ 이력서 1부	▶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 첨부(미첨부 시 불인정) ▶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되므로 <u>경력증명서</u> <u>제출이 불가능한 경력은 이력서 기재금지</u>	[별지 제3호]
④ 자기소개서 1부	▶ A4 2매 이내	[별지 제4호]
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	▶ A4 3매 이내 ▶ 임용예정 직위의 주요업무에 관한 추진방향, 추진전략, 추진일정 등을 자유롭게 기술	[별지 제5호]
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		[별지 제6호]
⑦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1부		[별지 제7호]
⑧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	▶ ⑨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한 경우 제출 불요	[별지 제8호]
⑨ 주민등록초본 1부	▶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▶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포함 ▶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^{별지 제8호} 를 <u>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 없으며 창원시</u> <u>의회 인사위원회에서 별도 조회</u>	

제출서류	내 용	비 고
⑩ 최종 학력증명서 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▶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인 경우 학위 증명서 함께 제출 ▶ 고졸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	
⑪ 경력(재직)증명서 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발행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(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) ▶ <u>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직무 관련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</u> ▶ 근무부서, 직책, 담당업무,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(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) ▶ 경력기간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 ▶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‘주당 근무시간’을 명시하여야 하며,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 자료 제출(미제출 시 불인정) 	
	※경력(재직)증명서 상 직무분야 증빙이 안될 경우 [별지 제9호] ‘경력사실 확인 증명서’ 추가 제출	[별지 제9호]
⑫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		[별지 제10호]
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국민건강보험(www.nhis.or.kr)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공단 방문 발급 ▶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“보험가입 전체기간” 발급 ▶ 미 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	
⑭ 자격증(또는 면허증) 사본 1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원본 제출한 경우, 희망시 확인 복사 후 반환 ▶ 자격(면허)증 유효기간: 면접시험일 기준 	

제출서류	내 용	비 고
※ <u>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에 한함</u> ※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※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 첨부 ※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되며,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		

7. 기타(유의)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**경력증명 사본을 첨부한 응시자는 최종합격 후 임용 전 원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됩니다.**
-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 (예: 졸업증명서)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리며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.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**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**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 조사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-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 (응시원서에 전자우편 주소,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)
- 이력서,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출생지, 학교명,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·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작성하지 않습니다.
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하며, 1차 공고 응시자는 기 제출한 응시원서로 같음함으로 별도 응시원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.
- 본 공고 내용은 재공고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창원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.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6조에 따라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「공무원연금법」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의 경우, 임용 시 연금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「공무원연금법」 제50조)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창원시의회 의정담당관 의정팀(☎055-225-5314)

붙임 제출서류 서식 각 1부. 끝.